

#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

2024. 7. 24.

도시환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건축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7. 5.
- 회부일자: 2024. 7. 5.
- 상정 및 의결: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4. 7. 24.)

## 2. 제안이유

- 월촌역 청솔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위 치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09-27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
- 건축개요 : 지하2층/지상24층, 공동주택 5개동 290세대
- 정비계획 내용

구 분		건축시설계획				
명 칭	면 적(m <sup>2</sup> )	주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m)	비 고
계	11,846.7	-	30 이하	252 이하	75 이하	-
A	10,079.1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26 이하	244 이하	75 이하	-
B	1,767.6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41 이하	291 이하	58 이하	-
평형별 세대수	구 분	전용면적(m <sup>2</sup> )		세대수(세대)		-
	공 동 주 택	계		290		-
		38형(59.96m <sup>2</sup> )		16		-
		59형(76.88m <sup>2</sup> )		69		-
		84형(84.98m <sup>2</sup> )		205		-

○ 추진경위

- 2006. 06. 12. : 달서구 12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
- 2015. 12. 10 : 정비구역 지정 고시
- 2016. 06. 13. : 조합설립인가
- 2017. 09. 05 : 과반수의 비대위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
- 2018. 06. 12 : 정비구역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“가결”
- 2018. 06. 20 : 정비구역 해제 고시
- 2018. 07. 02. :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- 2021. 12. 30. : 달서구 12 정비예정구역을 유보구역으로 지정
- 2023. 12. 19. : 유보구역의 일부 구역으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 
정비계획 입안 신청(추진준비위원회 → 區)
- 2024. 01. 05. ~ 2024. 03. 11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(1차)
- 2024. 03. 25. ~ 2024. 06. 03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(2차)
- 2024. 06. 11. ~ 2024. 7. 22. : 주민공람
- 2024. 06. 24. : 주민설명회

## ○ 향후계획

- 2024. 10 :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(區→市)
- 2024. 11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市)
- 2024. 12 :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(市)

## 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제15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안건은 월촌역 청솔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4. 7. 5.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 되었음.
- 송현동 1909-27번지 일원에 위치한 월촌역 청솔 재개발 구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으로 면적이 13,256㎡ 이고 구역내 토지 소유자는 124명이며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75%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였음(2023. 12. 19).
- 사업 규모는 지하2층, 지상 24층, 5개동 29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서측 3m, 남측 5m, 북측 4m 폭원을 확장하여 공공통행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임.
- 향후 계획으로는 2024. 7. 22.까지 주민공람 실시 후 대구광역시시장에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,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임.
-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,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와 주민설명회,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합리적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